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April 28, 2025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유럽연합: 이전가격 조정과 VAT 과세

2025 년 4 월 3 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이전가격 조정이 부가가치세(VAT)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무관(Advocate General, AG)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크레인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그룹의 일원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와의 용역 거래에 대해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에 따라 연간 조정하고,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벨기에 본사는 루마니아 계열사에 세 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VAT 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이 중 일부는 VAT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 Mechanism)를 적용했고, 일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 세무당국은 해당 용역의 실질적 제공 및 과세사업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VAT 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AG 주요 의견

-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직접세에 기반한 개념으로, VAT 적용에는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다만, 거래가 용역 제공으로 인정될 경우, VAT 과세대상 가능
 -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정된 대가는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이는 용역에 대한 실질적 대가로 볼 수 있음
 - VAT 과세 여부는 경제적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용역 제공 사실, 대가 지급, 법적 계약 관계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따라서, 모회사가 상업적 책임을 지고 자회사에 특정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이전가격 원칙에 따라 사후 산정되었다면 이는 VAT 지침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 VAT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외에도 용역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계약서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실제 용역 제공 여부 및 그 용역이 과세대상 사업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임

KPMG 시사점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VAT 과세 여부는 오랜 기간동안 불분명하였는데 이번 AG 의견 발표가 EU 내에서 이전가격 조정의 VAT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CJEU 가 AG 의 권고를 수용하게 된다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그룹내 계약을 재검토하고 해당 거래가 VAT 과세대상인지 사례별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거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VAT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정식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거래 상대방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재화/용역 거래가 실질적으로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벨기에: 이전가격 세무조사 확대

2025년 2월부터 이전가격 조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있으며, 300건 이상의 요청자료 목록이 발송되었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추가 요청과 그룹 단위 세무조사 확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국적기업은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요 조사 트렌드

1. 세무당국의 역량 강화:

- 2024년 기준 이전가격 조정 과세액은 11.7억 유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대기업 감사 부서, 중소기업 부서, 특수 세무조사국, 이전가격 전담팀(OTP) 등 조직별 전문성 강화

2. 문서화 요건 중심의 위험평가:

-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등의 문서화 미제출 기업이 우선 조사 대상

3. 요청자료 범위의 확대:

- 기업 맞춤형 질의서 및 금융거래에 대한 검토 증가
- 이전가격 조사 중 법인세, VAT 등 타 세목으로의 확대 사례 다수 발생

4. OTP(Operational Transfer Pricing) 중심의 프로세스 분석 강화:

-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운영 실무를 분석하기 위해 "설명하기(tell me), 보여주기(show me), 입증하기(prove me)"의 세 가지 원칙 기반 접근을 사용
- 납세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내부 검토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철저한 검토 및 자료 제출 필요성 증대

5. 그룹 단위 세무조사 확대:

- 동일 그룹 내 법인/지점 동시 조사 사례 증가
- 그룹 차원 일관된 이전가격 정책 적용의 필요성 증가

KPMG 시사점

최근 벨기에 이전가격 세무조사 동향에 비추어 볼 때, 벨기에 납세자는 이전가격 정책이 올바르고 일관되게 이행되고 있음을 이전가격 보고서 및 분석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최신예규/판례: 서면-2024-법규국조-2997, 2025.01.21

제목: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되지 않는 금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

1. 사실관계

- 국내법인은 차량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함.
-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의 95%는 익금불산입되고, 나머지 5%는 익금에 산입되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5%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7조상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

2.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이어야 함.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수익배당금의 95%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5%는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국내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산정 시 제외됨.
- 따라서,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익배당금의 5% 역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4.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익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03

관세

美 트럼프 2.0 시대 대응방안

1. 관세부과 특징: 공급망 정보에 따른 차별적 부과 (적대적·친화적)

- 트럼프 행정부는 對중국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對중국 보복관세 7.5%~25% + IEEPA 추가관세 20% + 상호관세 125% + 기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수입물품에서 식별되는 미국 가치 (U.S. Contents) *에 대해서는 추가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상호관세는 미국가치가 20% 이상인 경우 해당 가치를 공제한 후 부과되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역시 USMCA 충족 시 미국가치를 공제한 후 부과됨
- 철강 및 알루미늄의 추가관세는 미국 제련 또는 주조 시 적용 제외되고, 파생제품은 제품 內 철강 및 알루미늄 함량분만 적용함

*"미국가치 (U.S. content)"이란 미국에서 완전히 생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가공된 구성 요소에 기인하는 품목의 가치를 의미 ("U.S. content" refers to the value of an article attributable to the component produced entirely, or substantially transformed in, the United States. U.S.)

추가관세 조치사항	단위	관세율	공급망 정보 기반 차등 부과 구조		
			적대적 공급망 정보	친화적 공급망 정보	일반 공급망 정보
전세계 / 상호관세*	국가	10% ~ 125%	(실질적 변형국가) 對 중국 조치 대상	(미국가치 20% 이상 시) 미국가치 공제 후 부과	
자동차 / 추가관세	물품	25%	(실질적 변형국가) 對 중국 조치 대상	(USMCA 충족 시) 미국가치 공제 후 부과	
자동차 부품 / 추가관세	물품	25%	(실질적 변형국가) 對 중국 조치 대상	(USMCA 충족 시) 미국가치 공제 후 부과	
철강 / 추가관세	물품	25%, 200%	(러시아 제련/주조 시) 200% 적용	(미국 제련 또는 주조 시) 적용 제외	(파생제품) 철강 함량분만 적용
알루미늄 / 추가관세	물품	25%, 200%	(러시아 제련/주조 시) 200% 적용	(미국 제련 또는 주조 시) 적용 제외	(파생제품) 알루미늄 함량분만 적용
캐나다 / 추가관세	국가	10%, 25%	(실질적 변형국가) 對 중국 조치 대상	(USMCA 충족 시) 부과 유예	
멕시코 / 추가관세	국가	25%	(실질적 변형국가) 對 중국 조치 대상	(USMCA 충족 시) 부과 유예	
중국 / 추가관세	국가	20%	(실질적 변형국가) 對 중국 조치 대상		

*상호관세: 중국을 제외하고 현재 90일간 유예 중 (유예기간에도 10%의 보편적 관세는 부과) / 특정품목은 상호관세 제외 (도재 제조 장비, 스마트폰, 평면 디스플레이 모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반도체 장치 등)

2. 관세부과 대응 방안

1) 공급망 정보 기반 추가관세 회피 필요 : Value Chain 內 함량 정보 파악

-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제품 內 별도의 함량 구분을 통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수출기업들은 U.S. Contents 식별을 위한 하위 공급망 추적이 필요함
- 상호관세 대응을 위해서는 FTA 대응 목적의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N차 협력사 공급물품 비특혜 원산지 정보를 포괄하는 “공급망 전체” 차원의 정보 수집이 필요함

구분	FTA 적용 관점	상호관세 대응 관점
파악 필요 공급망 범위	• 1차 협력사	• 1차 협력사 이하 모든 협력사
필요 정보 범위	• 공급물품의 HS 코드 • 공급물품의 가치 정보	• 공급물품 별 비특혜원산지 정보 (비특혜 원산지: 美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른 원산지)
필요 정보 수준	• 월/연별 수준으로서 GAAP에 따른 마감정보	• 관련 규정 없음 • GAAP에 따른 업체별 마감정보 로 사용 가능 전망
기대 효과	• FTA 특혜세율 적용 가능	• 수출물품에 포함된 미국가치(U.S. content) 계산 가능 (對美 상호관세 영향도 감소)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USMCA 충족가치 및 US content 분석, 알루미늄, 철강의 파생 제품 함량 및 US content, 美 제련 및 주조 분의 구분을 통해 추가관세 리스크의 회피가 가능함

2) 비특혜원산지 상시관리체계: 비특혜 원산지 리스크 상시 관리체계 도입

- 최종 수출제품의 원산지에 따라 미국에서 부과되는 관세율의 편차가 극단적으로 확대된 상황으로, 특히 중국산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129%의 증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 제품의 비특혜 원산지 상시관리 수준 개선이 필수적
- 공급망의 변경에 따라 생산단위별 동일한 물품이라도 비특혜원산지로 변경 가능하므로, 실시간 변경되는 판가 및 공급망 정보를 포함하는 “생산단위별 원산지 판정의 관리”가 필요함

실질적 변경기준	기업별 상세 기준 설정 예시
① 품명의 변경	기존 품명의 키워드 활용
② 용도의 변경	부품의 범용레벨 설정
③ 부가가치 창출	판가 대비 재료비 비율 설정
④ 가공의 정도	국내 가공수준의 레벨 설정
⑤ 특성의 변화	HS 코드 설정

3) 관세효과 시뮬레이션 Tool 설계: 급변하는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손익 분석 Tool

- 불확실한 국제정세, 수시로 변동되는 관세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손익 분석 Tool 필요성 증대됨
- 관세율 변경, TP 변경, 생산지 변경 등 각 법인과 그룹에 미치는 손익을 도출할 수 있는 Tool을 통하여 관세정책 변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